한-싱가포르 FTA 상품의 수입



#수입통관

FTA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FTA수입통관 시 체크리스트

· 품목번호(HSK)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FTA관세혜택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준비

-FTA는 체결국가 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혜관세 적용신청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보관

-상품의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특혜관세적용의 적법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미 적용된 특혜관세가 배제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입절차

1. 수입계약체결

-거래선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 선행되어야 함

-계약조건(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의 확인

2. 수입허가 또는 신고

-수입자유화원칙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3. 신용장개설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단, 수입업자의 거래실적,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변경)

4.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인수

-수출업자는 신용장수령 후 수출품선적

-선적서류를 구비해 환어음발행 후 거래은행에 매입신청

-수입업자는 대금결제 후 선적서류인수

5. 통관

-수입신고: 수입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

-보세구역: 수입신고 후 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치하는 곳

6. 관세신고 및 납부

-가격신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수입물품가격에 대하여 신고
-납세신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대하여 신고

7. 무역분쟁 및 해결
-조정절차: 강제성이 없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절차: 강제성이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특혜관세적용 및 제한

@개념

특혜(협정)관세

-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특혜(협정)관세율

- 특혜(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특혜(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세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특혜관세의 적용 및 제한

적용요건

-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 안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1항).

·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수입신고서의 일부로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9호서식(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를 제출할 것[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입자의 인지 또는 정보에 기초해 작성할 것]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 신청서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할 것

-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만 수입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2항).

특혜관세의 적용제한

- 적용제한 대상

-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단서).

✓ 원산지에 관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원산지에 관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 결과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검증 요청에 대해 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7조제2항).

✓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현지검증의 동의 요청에 대해 검증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원산지에 관한 현지검증을 할 때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에 관한 검증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 원산지에 관한 검증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 거짓작성 등 반복행위자의 특혜관세 적용 제한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이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해 그 특혜관세 제한 지정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거짓작성 등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입신고 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특혜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 세관장은 거짓작성 등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특혜관세의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 차액의 부과·징수

·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시작한 날부터 검증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검증대상 수입자가 검증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해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18호서식).

·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 특혜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원산지검증을 시작한 날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서면검증을 통지한 날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보류 시의 관세 및 신고

·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확인 후 관세 환급

·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특혜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 해제신청

·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적용 제한자 해제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주소
✓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수입자
✓ 적용제한 해제신청의 사유

- 해제결정

· 세관장은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통보

· 세관장은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 관세청장은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 효력발생

・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그 해제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특혜관세적용신청 및 수정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청

-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1-1조제1항(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

확인

-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1-1조제2항).

- 확인 후 특혜관세 적용신청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1-1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싱가포르 FTA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1-1조제3항).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한·싱가포르 FTA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경우
✓ 원산지증명서가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신청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 신청서류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9호서식).

✓ 해당 물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해당 물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해당 물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외)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 서류의 구비 여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수입하는 경우 제외)
✓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다만, 사전심사 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물품

특혜관세 적용 심사

-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본문).
-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특혜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 특혜관세 적용제한 대상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 특혜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물품 수입자·수출자·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9호서식).

원산지확인의 특례

-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 세관장은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곳을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5-1조 제1항).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기재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5-1조 제2항).

✓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 결과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5-1조제3항).

-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 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5-2조제1항 본문).

·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3-5-2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 신청서류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신청서 기재내용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9호서식]

✓ 원산지 증빙서류

✓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후단).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세액보정신청 및 경정청구

· 신청

✓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전단).

· 심사

✓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해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9호서식).

✓ 세관장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을 준용해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통지

✓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혜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후단).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제출요구 대상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 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수입자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본문).
-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단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본문).

- 원산지증명서가 서식, 발급방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5호).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 적용요건과 자국법상 부과되는 그 밖의 법적 요건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

- 수입상품의 신고된 원산지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과 같은 수단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기록 및/또는 서류에의 접근 거부
· 원산지소명서 또는 정보 요구에 대한 미반응
·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련되는 기록 또는 서류의 미보존

- 상품이 한·싱가포르 FTA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해 선적되거나 그 영역에서 환적된 경우로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의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 하역·재선적·크레이팅(Crating)·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하지 않았음을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입증해 주는 정보
· 하역·재선적·크레이팅(Crating)·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

- 상품이 가공공정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상품의 생산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한 번에 한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제출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 및 제5.9조).

· 일방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거친 상품의 생산자·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당사국의 영역 밖의 생산 또는 가공공정 수행자로부터 획득한 서류
· 그 외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으로 인한 세액정정 등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사항 통보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세액정정 및 수정신고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는 그 오류로 인해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이하 "수정신고등"이라 한다)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
·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 수정신고등의 기간

·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검증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수정신고등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위반 시 제재

-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등을 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보관 기간

- 수입자는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호).

#원산지 검증

@개념

원산지 검증(조사)

-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1-0-2조제4호(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

@원산지 검증

검증의 원칙

- 검증대상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

✓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 검증방법

・ 원산지검증을 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1조).

✓ 수입자에 대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

✓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 포함)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

수입자에 대한 검증

- 서면검증

・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서면조사통지서를 검증개시 7일 전까지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2조제1항, 제4-3-2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서면검증대상자의 자료제출

✓검증대상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2조제2항 본문 및 제4-3-2조제1항).

· 서면검증 대상자의 연기신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자료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2조제2항 단서, 제4-3-2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자료제출 연기신청은 서면검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2조제3항 및 제4-3-2조제1항).

✓세관장은 검증대상자의 연기신청을 승인한 경우 조사연기승인서를 보내 그 사실을 검증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2조제4항, 제4-3-2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보정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2조제5항 및 제4-3-2조제1항).

- 현지검증

· 세관장은 현지검증을 하는 경우에 조사예정통지서를 보내 검증사실을 검증대상자에게 검증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3조제1항, 제4-3-2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 현지검증 대상자의 연기신청

✓검증대상자가 현지검증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연기신청서를 검증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3조제2항, 제4-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이 경우 검증의 연기는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증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검증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3조제2항 및 제4-3-2조제2항).

✓세관장은 검증대상자의 검증 연기신청을 승인한 경우 조사연기승인서를 보내 그 사실을 검증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3조제3항, 제4-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결과보고 및 통지

·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종료한 때에 즉시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5조제1항, 제4-3-2조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세관장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대상자 및 관세당국에게 다음 서식을 보내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서식 내용 중 과세 전 통지내용은 제외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2-5조제2항, 제4-3-2조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별지 제15호서식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16호서식).

✓서면검증의 경우: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현지검증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등에 대한 검증

- 서면검증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4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자 등에 대한 질문서

✓ 수출자등에 대해 요구할 자료 목록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원산지 검증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4조제3항).

· 수출자등에 대한 통지

✓세관장은 서면조사통지서를 검증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4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현지검증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등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하려는 경우 조사예정통지서와 함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5조제1항,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원산지 검증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5조제3항).

· 수출자등에 대한 통지

✓세관장은 조사예정통지서를 검증개시 30일 전까지 검증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

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5조제4항 및 별지 제13-1호서식).

· 현지검증 대상자의 연기신청

✓검증대상자가 현지검증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5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세관장은 검증대상자의 검증연기신청을 승인한 경우 조사연기승인서를 보내 그 사실을 검증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5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결과보고 및 통지

· 세관장은 원산지에 대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종료한 때에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7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세관장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대상자 및 관세당국에게 다음 서식을 보내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 검증 결과통지를 한 때에 과세 전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7조제2항,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서면검증의 경우: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현지검증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 관세청장은 원산지검증 결과보고 내용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4-3-7조제4항).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신청 제기

· 원산지에 관한 검증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17호서식).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보정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보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 및 통지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불복신청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검증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관세법」 제119조).

- 신청권자

· 불복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 신청범위

· 불복신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토를 해 줄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2항)

✓검토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 이상(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행정부처 포함)의 행정적 검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검토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검토(싱가포르에서는 보통법상의 사법적 심사의 형태)

위반 시 제재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원산지 사전판정

@개념

원산지 사전판정(심사)

- 원산지 사전판정(심사)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혜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사전판정절차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자국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입자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의문 및 원산지국과 관련한 서면 사전판정서를 발급할 것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1항).

- 신청제외대상

-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의 영역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나 검토 또는 불복청구 발

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은 사전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8항).

- 사전판정서 발급절차 규정 마련

·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해 사전판정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2항).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 그 대리인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수입 전에 그러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사전판정 요청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사전판정은 판정을 요청한 자연인 또는 기업이 제출한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는 규정

신청서류

- 사전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22호서식(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

·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 포함,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함)
✓사전판정을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판정에 필요한 서류

- 신청수수료

·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판정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5-1-1조제4항).

판정

- 보정

· 관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판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관세청장은 보정요청 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5-1-2조제1항).

✓보정할 사항
✓보정요구 이유
✓보정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 보정기간 연장

·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해 보정기간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5-1-2조제2항).

- 판정기간

· 관세청장은 사전판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판정해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2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반려

- 관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판정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전판정 결과통지

- 관세청장이 사전판정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에 판정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5-1-4조제1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사전판정서 효력

- 세관장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해 사전판정서와 해당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 사전판정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판정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5-1-5조).
- 수입당사국은 사전판정일부터 3년간 그 판정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10항).

・ 각 당사국은 사전판정을 한 일자나 발급일 또는 판정에 명시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부터 해당 상품이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사전판정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9항).

특혜관세의 적용

-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판정서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판정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판정서의 내용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 사전판정 후 수입신고 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판정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전판정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판정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판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해당 사전판정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사전판정의 변경

사전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

-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4항).

· 판정이 사실착오에 기초한 경우
·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한·싱가포르 FTA의 개정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그 국내 법률과 규정의 변경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사전판정서 내용의 변경

- 변경사유

·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사전판정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한·싱가포르 FTA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 사전판정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판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판정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해당 사전판정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신청인에 대한 변경통지
· 관세청장은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변경된 사전판정서의 적용
·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 후에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사전판정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면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6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사전판정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판정과 관련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7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변경 후 적용유예신청

- 변경된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서류를 사전판정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판정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판정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판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사전판정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 심사결과 통지

・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판정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신청인에 의한 수정통보

- 사전판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25호서식)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해당 사전판정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
✓변경된 내용

· 사전판정서 원본
·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 사전판정서의 변경

· 관세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사전판정서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사실을 심사해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 통지

· 관세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사전판정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5-1-6조제3항).

✓사전판정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사전판정서 변경내용 적용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사전판정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불복신청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전판정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신청권자

·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사전판정을 받은 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

- 신청범위

· 불복신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토를 해 줄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2항)

✓검토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 이상(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행정부처 포함)의 행정적 검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검토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검토(싱가포르에서는 보통법상의 사법적 심사의 형태)

위반 시 제재

- 사전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6호).

#관세철폐 등

@관세철폐

점진적 철폐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3A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1항).

관세철폐를 위한 협의

-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관세철폐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을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4조제2항 전단).

- 효력

·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관세철폐계획의 관세율 또는 감축단계분류를 대체하고, 부속서 3A에 대한 개정으로 취급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2항 후단).

· 합의 내용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날에 발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22.4조제2항).

@관세면제

일시수출물품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내용 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출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출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수출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내용 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수리 또는 가공이란 물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의 수리 또는 가공을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과정은 제외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해 완성된 물품으로 조립한 후 다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작업이나 과정

- 면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관세협력

협력사항

- 한국과 싱가포르는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

· 원산지 검증

✓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다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그 영역 안에서의 검증 과정에 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의 검증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가호).

✓ 양 당사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해 다른 당사국 주재 대사관에 관세연락관을 둘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가호).

· 서류 없는 통관절차

✓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류 없는 통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자국의 다른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관세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나호).

✓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영업거래를 지원하는 전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나호).

✓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실현과 촉진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나호).

· 위험 관리

✓ 양 당사국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검사활동을 집중하되,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품에 대해 확인한 위험을 기초로 한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채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다호).

✓ 양 당사국은 통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다호).

· 최적 관행 및 정보의 공유

✓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통관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와 세관공무원을 위한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라호).

✓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당사국의 국내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 및 사안과 관련된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방안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라호).

· 투명성

✓ 각 당사국은 관세문제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률·규정·지침·절차 및 행정심판을 인터넷 또는 문서 형태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마호).

✓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관세 문제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 곳 이상의 상담창구를 지정, 설치 및 유지하고, 그러한 문의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마호).

✓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각 당사국이 위험분석 실시 및 표적설정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한 법집행 절차와 내부 운영지침을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제1항마호).

@비관세조치

개념

- 비관세조치

· 비관세조치란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합니다(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FTA 용어집).

-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1호).

✓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사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사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동물·식물 또는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생산품으로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사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해 당사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 기술규정

· 기술규정이란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준수가 강제되는 문서를 말합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1호).

✓ 기술규정에는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만 규정하거나 이를 포함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1호).

- 표준

· 표준이란 상품이 공통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규칙, 지침,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해 놓은 문서로서, 그 준수가 강제적은

아니나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문서를 말합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2호).

· 표준에는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만 규정하거나 이를 포함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제2호).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란 상품·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이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 적합성평가 절차의 예로는 표본추출·시험·검사·평가·검정·인증·등록·인정 및 승인, 또는 그 조합이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위생 및 검역조치

- 일반원칙

· 한·싱가포르 FTA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3항).

·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1호).

·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2항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2호 본문).

✓ 다만,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2호 단서).

- 비관세조치로서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금지

·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1항).

·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함에 있어 자국의 영토와 다른 당사국의 영토 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다른 국가를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3호).

- 접촉선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당사국으로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연락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4항).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 싱가포르: 농산식품수의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 일반원칙

· 양 당사국은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및/또는 제조업자나 제조공정의 평가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2호).

✓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한 문제 또는 분야에 적절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방안들에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정, 공급자의 적합성 선

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문제에 관한 협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2호).

·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3호).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하는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수용

·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3호).
·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4호 본문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4조).

✓근본적인 기후 또는 지리적 요소나 기술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4호 단서).

-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로 해당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해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적합성 인증서와 마크를 포함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3호).
-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의 지정 당국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정 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경우, 상품이 대한민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4호).
-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지정 당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의 지정 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경우, 상품이 싱가포르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5호).